##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06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이용우·이원택·박홍배

전진숙 · 정혜경 · 김태선

김 윤 • 박용갑 • 김우영

이학영 · 임미애 · 천하람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의미함.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낮은 상황임. 특히 심폐질환과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기·소음·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시 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법률 제 호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생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환경기준은 <u>대통령령으로</u>	② <u>세계보건기구(W</u>
정한다.	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대
	<u>통령령으로</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